제2조(정의)

- 1.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한다.
- 2.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. 기준시점은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. 다만, 기준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날짜에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.
- 3.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.
- 4.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.
- 5.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6. 적산법이란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7.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8.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, 시점수정,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9.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,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,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10. **수익환원법**이란 대상물건이 **장래**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**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**하 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11. 수익분석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.
- 12. 감가수정이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, 기능적 감가 **또는 경제적 감가**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**재조달원가에서 공제**하여 기준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.
- 12의2. **적정한 실거래가**란 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거래 시점이 **도** 시지역은 3년 이내,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인 거래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업자가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등 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.
- 13. 인근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형성요인 중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14.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을 말한다.
- 15. **동일수급권**이란 대상부동산과 **대체·경쟁**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,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한다.

제5조(시장가치기준 원칙) 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
-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.
- 1.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.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.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6조(현황기준 원칙) ①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(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) 및 **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**를 기준으로 한다.

-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 - 1.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2.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3.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12/23

제7조(개별물건기준 원칙 등)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.

- ② **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**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**용도상 불가분**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**일괄**하 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-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.

제8조(감정평가의 절차) 1. 기본적 사항의 확정 2. 처리계획 수립 3. 대상물건 확인 4. 자료수집 및 정리 5. 자료검토 및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6.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7.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

제9조(기본적 사항의 확정) 1. 의뢰인 2. 대상물건 3. 감정평가 목적 4. 기준시점 5. 감정평가조건 6. 기준가치 7.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 8.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

제11조(감정평가방식)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.

- 1. 원가방식: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
- 2. 비교방식: 거래사례비교법,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
- 3. 수익방식: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

제14조(토지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5조(건물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) 감정평가업자는 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구분소유 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 을 **일괄**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**거래사례비교법**을 적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.

제17조(산림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산림을 감정평가할 때에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되. 소경목림인 경우에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감정평가업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8조(과수원의 감정평가) 감정평가업자는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19조(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 에 따라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감정평가업자는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에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20조(자동차 등의 감정평가) ① 감정평가업자는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- ② 감정평가업자는 건설기계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③ 감정평가업자는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에 선체·기관·의장별로 구분하여 감정평가하되. 각각 **원가법**을 적용하 여야 한다.
- ④ 감정평가업자는 항공기를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- ⑤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.

제21조(동산의 감정평가) 감정평가업자는 동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,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.

제22조(임대료의 감정평가)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에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.

제23조(무형자산의 감정평가) ③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,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저작권, 전용측선이용권, 그 밖의 **무형자산**을 감정평가할 때에 **수익환원법**을 적용하여야 한다.

[예제1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A건물의 m'당 재조달원가는? 제20회

○ A건물은 10년 전에 준공된 4층 건물이다. (대지면적 400m², 연면적 1,250m²)

○ A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내역(단위: 천원)

직접공사비 : 270,000 간접공사비 : 30,000 공사비계 : 300,000 개발업자의 이윤: 60.000

총계: 360,000

○ 10년 전 건축비 지수 100, 기준시점 현재 135

① 388,800원/m² ② 324,000원/m² ③ 288,000원/m²④ 240,000원/m²⑤ 216,000원/m²

[예제2] 원가법에 의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?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 제29회

○ 신축에 의한 사용승인시점: 2016. 9. 20.

© 사용승인시점의 신축공사비: 3억원(신축공사비는 적정함) ② 공사비 상승률: 매년 전년대비 5%씩 상승

ⓒ 기준시점: 2018. 9. 20.

◎ 경제적 내용년수: 50년 ◎ 감가수정방법: 정액법

② 내용년수 만료시 잔존가치 없음

① 288,200,000원 ② 302,400,000원 ③ 315,000,000원 ④ 317,520,000원 ⑤ 330,750,000원

[예제3] 원가법으로 산정한 대상물건의 적산가액은? (단, 주어진 조건에 한함) 제31회

•사용승인일의 신축공사비: 6천만원(신축공사비는 적용함) •사용승인일: 2018.9.1.

•기준시점: 2020.9.1. •건축비지수 - 2018.9.1. = 100

 •경제적 내용년수: 40년
 - 2020.9.1. = 110

•감가수정방법: 정액법 •내용년수 만료시 잔가율: 10%

① 57,300,000원 ② 59,300,000원 ③ 62,700,000원 ④ 63,030,000원 ⑤ 72,600,000원

[예제4] 제시된 자료를 활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공시지가기준법으로 평가한 토지 평가액(원/m²)은? 제

26회

○ 기준시점: 2015.10.24

© 소재지 등: A시 B구 C동 177, 제2종일반주거지역, 면적 200㎡

- © 비교표준지: A시 B구 C동 123, 제2종일반주거 지역, 2015.1.1 공시지가 2,000,000원/㎡
- ② 지가변동률(2015.1.1~2015.10.24): A시 B구 주거지역 5% 상승
- ◎ 지역요인: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동일
- ⊌ 개별요인: 대상 토지가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 조건은 5% 열세, 환경조건은 20%우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
- △ 그 밖의 요인으로 보정할 사항 없음(상승식으로 계산할 것)
- ① 1,995,000원/m² ② 2,100,000원/m² ③ 2,280,000원/m² ④ **2,394,000원/m²** ⑤ 2,520,000원/m²

[예제5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은? 제29회

□ 대상토지: A시 B동 150번지, 토지 120m² 제3종일반주거지역

⑤ 기준시점: 2018. 9. 1.

◎ 거래사례의 내역

- 소재지 및 면적: A시 B동 123번지, 토지 100m²

- 용도지역: 제3종일반주거지역

- 거래사례가격: 3억원

- 거래시점: 2018. 3. 1.

- 거래사례의 사정보정 요인은 없음
- ◎ 지가변동률(2018. 3. 1. ~ 9. 1.): A시 주거지역 4% 상승함
- ◎ 지역요인: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
- 📵 개별요인: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5% 열세함
-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
- ① 285,680,000원 ② 296,400,000원 ③ 327,600,000원 ④ 355,680,000원 ⑤ 360,400,000원

[예제6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비준가액은? 제31회

•평가대상토지: X시 Y동 210번지, 대, 110m², 일반상업지역

•기준시점: 2020.9.1.

•거래사례

- 소재지: X시 Y동 250번지

- 지목 및 면적: 대, 120m²

- 용도지역: 일반상업지역

- 거래가격: 2억 4천만원

- 거래시점: 2020.2.1.

-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매매임

•지가변동률(2020.2.1.~9.1.) : X시 상업지역 5% 상승 •지역요인 :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의 인근지역에 위치함 •개별요인 : 대상토지는 거래사례에 비해 3% 우세함

•상승식으로 계산할 것

① 226,600,000원 ② 237,930,000원 ③ 259,560,000원 ④ 283,156,000원 ⑤ 285,516,000원

[예제7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? 제30회

→ 가능총소득: 8,000만원

©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: 가능총소득의 10%

© 수선유지비: 400만원

◎ 화재보험료: 100만원

◎ 재산세: 200만원

⊌ 영업소득세: 300만원

△ 부채서비스액: 500만원

◎ 환원율: 10%

① 5억 7천만원 ② 6억 원 ③ **6억 5천만원** ④ 6억 7천만원 ⑤ 6억 8천만원

[예제8]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? 제28회

→ 가능총소득: 5,000만원

© 공실손실상당액: 가능총소득의 5%

© 유지관리비: 가능총소득의 3%

◎ 부채서비스액: 1,000만원

◎ 화재보험료: 100만원

🗎 개인업무비: 가능총소득의 10%

△ 기대이율 4%, 환원율 5%

① 6억원 ② 7억 2,000만원 ③ 8억 2,000만원 ④ **9억원** ⑤ 11억 2,500만원

[예제9]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환원법에 의해 평가한 대상부동산의 가치는? 제24회

○ 유효총소득(EGI): 38,000,000원

○ 영업경비(OE): 8,000,000원

○ 토지가액 : 건물가액 = 40% : 60%

○ 토지환원이율: 5%

○ 건물환원이율: 10%

① 325,000,000원 ② **375,000,000원** ③ 425,000,000원 ④ 475,000,000원 ⑤ 500,000,000원

[예제10]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시 적용할 환원이율(capitalzation rate, %)은? 제24회

○ 순영업소득(NOI): 연 30,000,000원

○ 부채서비스액(debt service): 연 15,000,000원

○ 지분비율: 대부비율 = 60%: 40%

○ 대출조건: 이자율 연 12%로 10년간 매년 원리금균등상환

○ 저당상수(이자율 연 12%, 기간 10년): 0.177

① 3.54

② 5.31

③ 14.16

(4) 20.40

© 21.24